

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(최수진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 요 내 용

- 연구개발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연구개발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연구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8조제2항 등).

II. 검 토 의 견

- 개정안의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, 일부 경미한 자구수정을 하였음(주서본 참조).

(전문위원 최 기 도)